

#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2016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86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. 6. 13.  
발 의 자 : 주의원 등 11명

## 1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,
-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함.(안 제7조 신설)
-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. (안 제15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별임1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임2

## 5. 관계법령발췌서 등 : 별임3

## 6. 예산수반사항 : 별임4 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

## 7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※ 예고기간 : 2016. 6. 3. ~ 6. 8.

## 8. 기타 참고사항 : 집행부 검토의견서

## 【불임 1】

#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시”를 “안산시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위원의 해촉)”을 “(위원의 위촉 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“시장”을 “안산시장”으로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해촉을”을 “위촉 해제를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위원의 제척 등)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, 심의,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, 심의,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.

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, 심의,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,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8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
제15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안산시 소속 공무원 및 안산시의회의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붙임 2】

#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위원의 위촉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총괄부서는 <u>시</u>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, 소관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<u>해촉</u>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위원 <u>스스로</u>가 <u>해촉을</u> 원하는 경우</p> <p>4. ~ 7. (생략)</p>	<p>제5조(위원의 위촉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안산시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6조(위원의 위촉 해제) <u>안산시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위촉 해제</u>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위촉 해제를</u> -----</p> <p>4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<p>〈신설〉</p>	<p>제6조의 2(위원의 제척 등)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, 심의, 의결 등을 참여할 수 없다.</p> <p>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, 심의,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, 심의,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</p>

현행	개정안
제8조(위원의 구성 및 임기) ① (생략)	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,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② 위원회에는 여성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직능별로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이때 해당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은 남성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의 차가 20%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③ ~ ④ (생략)	제8조(위원의 구성 및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수당)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3. (생략)	제15조(수당) 안산시 소속 공무원 및 안산시의회의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